

##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을 통해 본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

이 지 은  
(이화여대)

### 1. 서론

적법하고 공정한 형사절차에 따라 형벌권이 행사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이 자 헌법적 권리이다(최철 2009: 258). 따라서 형사사법절차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하고 정의와 공평의 이념을 실현해야 하며(박현준 2013: 3), 누구든지 인종, 언어,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사법절차상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사법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인권 및 법률적 권리 보호 차원에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의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국제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이지은 2012a: 15). 국제법적으로 형사 피의자 및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사실과 체포 이유를 포함하여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사법절차상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14조, 유럽인권협약 제5조, 제6조 등). 사법통역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하여 방어권 및 진술권 등 권리 보장 및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며, 인적교류

가 날로 확대되는 국제화 시대 사법제도에서의 적정절차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지은 2012a: 15).

국내에서는 통역을 제공받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나 증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역을 제공하고 있다(이지은, 장원경 2016: 255-256).<sup>1)</sup> 법원통역에 관한 대법원 재판 예규 제1432호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가 있지만 다양한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필요한 통역 제공의 방식과 범위, 통역사의 자격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령은 없다(이지은, 장원경 2016: 261-262). 사법통역 수요자라 할 수 있는 법원, 경찰, 검찰,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는 해마다 통역하기를 희망하는 통역인 후보대상자를 자체적으로 모집, 선발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통역인으로 활동하는 인력은 중복될 수 있으나 대법원에 등록된 전국 법원의 통·번역인만 해도 천 명을 훨씬 상회하며,<sup>2)</sup> 경찰에서 활동하는 민간인 통역요원도 3천 명을 넘는다(이지은 2015: 94).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는 통역인 선발 시 통역 경력과 전공을 우대하지만 언어전공자, 해외 유학 및 거주 경험도 선발우대요건이다(이지은 2012a, 2014, 2015 등). 단순히 해당 언어 전공자이거나 해외 유학이나 거주 경험이 있다고 해서, 또는 사법통역 경험이 있다고 해서 통역능력에 대한 검증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번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학력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심사만으로 지역 기관별로 통역인 또는 통·번역인을 선발하여 통역은 물론이고 필요한 번역까지 의뢰하고 있다.

사법통역은 수사에서부터 재판까지 법률담화(legal discourse)를 다룰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통역기술을 요한다(Hale 2004, 2010; 이지은 2012a, 2017 등). 사법통역이 전문적인 통역능력과 법률 및 직업윤리적인 소양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재하며, 사법통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다수

- 
- 1) 형사소송법 제180조와 제181조는 형사소송절차 전반에서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 즉 외국인과 농자 또는 아자에게 각각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2) 연합뉴스 2016년 2월 15일 기사 ‘법정에 서는 외국인 늘고 다양...법정 통역 수준 어디까지’는 2015년 기준 대법원에 등록된 통역사 숫자를 29개 언어 1,736명으로 보도하였다. 경찰청 외사과 제공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수사통역에 투입되는 경찰의 민간인 통역요원은 전국적으로 3,057명으로 확인되었다(이지은 2015: 94)

의 통역인들은 사법통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기술훈련을 받지 못한 실정이다. 통역전문가들이 사법통역을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사법통역 교육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다(김진아 2008; 정혜연 2009; 이지은 2012a, 2013, 2017). 교육이 이뤄진다고 해도 일회성 또는 단기 교육 위주이며 그나마 기본적인 교육도 제공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일일 교육이 아닌 소정의 기간에 걸친 사법통역 교육 사례로 2016년 경찰청이 민간인 통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교육을 포함하여 2013년~15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의 비학위과정인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2013년~14년 서울시·이주민방송에서 실시한 사법통역인 양성교육, 2009년~10년 법무부의 이주여성 대상 법정통번역교육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법통역 교육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운영상의 이유로 여러 언어가 섞여 수업을 하거나 통역기술 교육이 온라인상으로만 이루어져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문통역 교육을 받은 통역인들도 사법통역에 관한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지은 장원경(2015)은 법원에 등록된 통·번역인 후보 가운데 통역을 전공한 통역인들도 순차 통역방식으로 선고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통역하지 못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 같은 실정에서 그간의 국내 사법통역에 관한 선행연구는 사법통역 규범에 어긋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통역인의 자질 부족뿐 아니라 통역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진술을 청취하는 수사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사법통역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제도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이지은 2012a, 2012b; Lee 2010, 2015, 2017a, 2017b 등). 단적인 예로, 정확한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폐쇄적인 특성상 통역인들이 무슨 사건의 통역을 하러 가는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 통역을 하러 가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으로 통역 품질을 담보하는 조치는 상당히 미비하다(이지은 2012a: 107). 무엇보다 통역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사법통역을 맡았을 때, 그 폐해는 사건 당사자에게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로 돌아갈 뿐 아니라 절차적 적정성까지 침해하고 나아가 사법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 또한 통역품질의 문제는 행정적으로도 사법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오역 등 사실 오인으로 인한 항소나 재심은 엄청난 국고 낭비가 아닐 수 없다(이지은 2012a: 16).<sup>3)</sup> 그렇기 때문에 체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사법절차에 걸쳐 제공되는 통역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수사단계에서 정보 수집과 사실 확인은 사법절차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통역의 정확성을 포함한 품질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Lee 2017a: 195). 수사단계에서 통역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에 초점을 맞추어 통역의 정확성과 통역기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피의자 권리 고지의 법적 의미를 살펴본 후 사법통역 수요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통번역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통역 전공 학생들이 지금과 같이 통역교육이 전무하거나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의자 권리 고지를 듣고 어떻게 통역하는지 고찰함으로써 체계적인 사법통역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피의자 권리 고지와 통역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체포 당시 그리고 수사기관의 조사나 신문 받기 전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sup>4)</sup> 피의자는 위협이나 강압, 회유에 의해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피의자의 자유선택에 의한 진술이라는 ‘임의성립’이 되어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는 장치이기도 하다(박용철 2010).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으면 자유의사에 의해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를 뒷받침한다.<sup>5)</sup> 변호인 선임권은 법률전문가이자 국가기관으

3) 아직 국내에서 부정확한 통역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항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역이 제공되는 사법절차의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원진술에 대한 통역 녹음을 확보하기 어렵고, 설사 확보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오역으로 인한 항소심과 재심이 드물지 않다(이지은 2012a; 안성훈, 이지은 2012).

4)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2항에 진술거부권과 제 4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제5항에는 체포나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이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 682;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판결

로서 권위와 강력한 조직을 대표하는 검사에 비해 열등한 지위에 놓인 피의자가 충분히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이다(금태섭 2012: 192).<sup>6)</sup>

누구든지 적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정신이 형사사법절차에 적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법절차를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되는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박현준 2013: 4-5).<sup>7)</sup>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진술거부권 고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이동희 2009: 148).<sup>8)</sup>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변호인 조력권을 명시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가 강화되었다(이영돈 2014: 262).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은 적정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수사실무에서 강조되는 사항이다(황의갑 2010: 147). 수사기관은 이와 같이 중요한 권리를 법이 정한 대로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유영현, 김종오 2008: 489).<sup>9)</sup>

적정절차의 원칙과 관련 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는 누구나 이를 이해하고, 그 권리를 행사 또는 포기해야 마땅하다. 즉, 피의자의 연령, 정신지능, 언어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이해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자발적인 의사결정으로 충분

6)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7) 또한 형사소송법 제72조에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도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가 명시되어 있다.

8)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는 진술거부권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이어서 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9) 형사소송법 제244조 3항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 신문 전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히 인지한 상태에서 권리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Solan & Tiersma 2005: 75-76).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피의자 권리 고지가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상 그렇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언어 표현의 문제와 고지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영미권에서 경찰이 사용하는 진술거부권(미란다) 고지는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별, 수사기관별, 개인별로 고지의 차이가 있어 그 언어적 표현과 이에 대한 피의자의 이해 문제가 연구되어 왔다.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미란다 고지의 복잡한 복문 구조와 모호한 언어적 표현이 이해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Shuy 1997; Gibbons 2001, 2003; Solan & Tiersma 2005; Rock 2007; Ainsworth 2010). 관련 국내 연구논문이 많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 고지와 이해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사법경찰의 미란다 고지의 시기와 내용, 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이해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언어이해력이 부족한 취약집단에 대한 보호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있었고(김민지 2012; 박현준 2013), 실험연구에서도 미란다 고지에 대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이해도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김민지, 피세영 2014: 38).

이와 같은 국내의 연구결과는 통역에 의존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역인의 권리 고지 이해와 통역 능력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가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법통역은 언어적으로 취약집단에 속한 피의자들의 권리 보호와 직결된다. 만일 통역인이 정확히 이해하지 않았거나 설사 이해했다 해도 이를 해당 언어로 표현할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권리 고지는 무의미한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권에 해당하는 피의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의 고지는 법률이 요구하는 중요한 형사사법절차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역이 필수적이며, 통역은 원발화와 법률적 등가(legal equivalence)를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만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을 다룬 실증 연구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통역의 정확성 문제가 발생한다. 표준화된 피의자 권리 고지문이 없는 영국과 호주 빅토리아주 경찰의 피의자 권리 고지를 포함한 피의자 신문 통역을 분석한 사례연구들은 통역사의 이해 및 통역 능력 부족과 같은 자질 문제와 함께

경찰관의 권리 고지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Russell 2000; Nakane 2007). 이 연구들은 권리고지 자체가 법률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식으로 통역하기 쉽지 않은데다 경찰관이 아주 짧은 단위로 말하거나 많은 내용을 길게 말한 다음 통역할 말차례를 내어주는 것 모두 정확하게 통역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지은 2017: 393 재인용).

국내 수사기관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의자 권리 고지가 어느 정도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고지 방식이 의례적이고, 문어적인 표현에 기초하며, 통역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의자의 경우 통역인의 역량에 따라 권리 고지 절차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지은 2017: 357-359 참조). 실제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는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할 때 통역인에게 미리 권리 고지문을 제공하지 않는 관행상 통역인이 이에 익숙하지 않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정확하게 통역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지은(Lee 2017b)에 의하면 통역인의 통역능력 부족도 문제이지만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통역을 통한 권리고지와 이해 확인 방식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통역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역인의 역량은 물론 이들과 함께 일하는 수사기관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의 필요성을 가리킨다.

### 3. 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법통역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통역인들과 기초이론 교육을 받은 통역인들이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피의자 권리 고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통역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피의자 권리 고지의 통역의 어려움과 사법통역 교육의 효과 내지 필요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통역인은 전문통역교육과정에 갓 입학하여 전문적인 통역기술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중언어구사력을 갖춘 통역 전공 학생을 가리킨다. 이들이 통역 전공자들로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발되는 실정상 이들을 사법통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통역인과 유사하거나 우수한 수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통역인들은 총 21명으로 사전 교육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뉜다. 강의 내용에는 사법통역의 기본원칙, 형사사법절차,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과 같은 피의자의 권리, 신문통역의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었으며 시간 제약으로 통역기술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통·번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없다. 법원에서 신규 통·번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한 시간 내외의 약식 통역교육도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의 사전 교육은 이러한 약식교육에 준하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1번부터 15번이 속한 첫 번째 그룹은 사전 교육 없이 피의자 권리 고지를 통역하였고, 16번부터 21번이 속한 두 번째 그룹은 수사기관 통역에 관한 50분 강의를 듣고 피의자 권리를 통역하였다. 통역한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고지하게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244조의 3에 기초한 피의자 권리에 해당하는 4개 문장이다(각주 8참조). 첫 번째 그룹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기 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는 상황이라고 안내받고 1분 정도 준비시간을 가진 후 고지 내용을 한 문장씩 듣고 순차통역 하게 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기초교육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차이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통역 녹음을 진행하였다. 전체 원문을 총 30초 안팎의 속도로 읽어주고 통역을 녹음한 후 이를 평가, 분석하였다. 평가는 연구자를 포함한 통역 교수자 3인이 각각 녹음 파일을 듣고 전사본을 확인하면서 3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sup>10)</sup> 피의자 권리 고지의 핵심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전달하는지를 중심으로 총괄평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 3.1 통역 평가 결과

한눈에 통역 품질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 통역인의 문장 통역에 대한 평균 점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표 1>은 첫 번째 그룹에 대한 문장별 통역 평가결과이며 <표 2>는 두 번째 그룹에 대한 문장별 통역 평가결과다. 첫 번째 그룹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0.851, 두 번째 그룹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0.842

10) 사소한 문법 오류와 발화 속도를 무시하고 내용 전달이 비교적 충실하면 3점, 대강의 의미를 전달한 사람의 경우 2점, 중대한 오류가 있어 내용 전달이 부실하면 1점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은 각 통역인에 대한 평가이유를 점수와 함께 제출하였다.



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다.11)

〈표 1〉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 평가표

통역인 \ 점수	1. 문장	2. 문장	3. 문장	4. 문장
1번	2	1.7	1.7	1
2번	1.7	3	1	1
3번	2	3	1	2
4번	2	1.3	1.3	2
5번	1.7	2.3	2.3	2.7
6번	1	1	1	2.3
7번	2	1	1.3	1.3
8번	2	3	2.3	3
9번	2	3	2	2.7
10번	1.7	1	1	1.3
11번	1.3	1	2	2.3
12번	2.3	2	1	1
13번	2	2.3	2.3	2
14번	1	1.7	1	1.3
15번	1	2.3	1.7	2
종합평균	1.7	2	1.5	1.9

〈표 2〉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 평가표

통역인 \ 점수	1. 문장	2. 문장	3. 문장	4. 문장
16번	1	2	1	2
17번	1.7	1.7	2	1.7
18번	2.7	3	2.3	2.7
19번	1	3	2.7	2.3
20번	1.7	3	1.7	2.3
21번	1	2.3	1	1.7
종합평균	1.5	2.5	1.8	2.1

평가 결과를 요약하자면, 전체 통역인을 통틀어 피의자 권리 고지를 모두 충실하게 통역한 사람은 적었다.12) 평균점 기준으로 7명이 4개 문장 가운데 1

11) 연속형 변수(3점 척도)를 바탕으로 하며 평가자가 3인임을 고려하여 ICC(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급내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12) 본 연구 목적이 개별 통역인 평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평균점 기준으로 최고점은 첫 번째 그룹의 8번이 (4점 만점) 2.6점, 두 번째 그룹에서는 18번

개 문장에서 3점 만점을 받았고 단 1명만 2개 문장에서 3점을 받았다. 대부분 생경하고 법률적인 텍스트 내용에 당황스러워 하였고 이로 인해 통역 오류는 물론 발화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 권리 고지를 통역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첫 번째 그룹에 비해 약식 교육을 받은 두 번째 그룹의 경우 1번 문장을 제외하면 평균점이 높지만 독립표본 T검정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1.356, p=0.179(> 0.05)$ ). 사전 교육 여부를 떠나 통역인 개인의 능력 차이를 간과할 수 없으며 숫자적으로 매우 제한된 표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보다는 지식 위주의 약식 교육이 실제 통역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위 <표 1>과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권리 고지에서 문장별 통역 점수는 차이를 보인다. 위 표의 1~3번 문장은 진술거부권, 4번 문장은 변호인 조력권 고지에 해당한다. 문장별 평균점을 보면 1번과 3번 문장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통역하기 까다로웠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두 문장이 법률담화의 특성이 강한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으로 나누어 주요 통역 평가 내용을 살펴보겠다.

### 3.2 진술거부권 고지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번 문장은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 그대로이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는 신문동안 모든 질문 또는 어떤 개개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도 된다는 뜻이다. 단순히 진술거부권을 명시하지 않고 그 의미를 구체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를 충실히 통역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2.7점을 받은 것이다. 한편 최하점은 첫 번째 그룹의 10번과 14번이 1.3점, 두 번째 그룹에서는 1번이 1.5점을 각각 기록했다.

평균점 기준 2.3점으로 첫 번째 그룹에서 최고점을 받은 12번 통역인의 통역을 보면 “You have the right to not speak or not answer to any of the questions.(귀하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 전치사 사용 등 약간의 문법적 오류가 있지만 의미를 잘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3번과 7번 통역인은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으로 통역하여 영미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진술거부권의 내용을 충실히 담지 않아 문제가 있다.

법률적인 권리를 표할 때 조동사 ‘can’보다는 ‘may’가 적합한데 1번 문장을 통역할 때 ‘may’를 사용한 통역인은 전체를 통틀어 14번과 18번 두 명뿐이었고, 이중 정확히 내용을 재표현한 통역인은 18번이었다. 18번은 “You may remain silent for all questions or you may choose to remain silent for certain question.(모든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함으로써 question의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의미를 비교적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다른 통역인들의 통역을 보면 해당 문장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자의적으로 가감함으로써 내용을 왜곡한 경우이거나 문법 오류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어역(register)을 사용하는 등의 표현 오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번 통역인의 경우, “You have a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 and you have a right to opt out some questions you find not relevant.(귀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질문을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였는데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누락된 데다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질문을 피하다’는 통역이 부정확하다. 관련성이 없다가보다는 자기에게 불리할 사실에 대한 진술 거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추가이다.

상당수의 통역인이 맥락에 대한 이해와 주제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통역인 11번은 “You are entitled to refuse to make any statement at court or make statements for each uh each question.(귀하는 법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로 통역하였는데 피의자 권리에 대한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 피의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났다. 통역인 10번도 줄곧 ‘진술하다’는 동사를 ‘make testimony’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주로 법정진술 또는 증언에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피의자 신문에 적합한 어휘 선택이 아니다. 통역인 14번과 15번의 통역도 ‘진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드러났다. 14번은 “You may not give any explanation or about any individual.(귀하는 어떠한 설명이나 어떤 개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설명으로 이해하였고, 15번은 “You are not to question individually and as a whole(귀하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통역하였는데, 이는 동사를 혼동하여 ‘answer(답하다)’ 대신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You have right to not explain about yourself(자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통역한 통역인 6번은 통역인 14, 15번과 함께 3인의 평가자에게 공히 최하점을 받았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통역인 절반(16, 19, 21번)이 1번 문장에 대한 통역에서 최하점을 받았다. 이중 16번 통역인의 예를 보면 “You have a right to deny- deny answer the questions and you can the answer the whole questions and you can also have a right to not to answer the specific question that will be provided. (귀하는 부인할 권리, 질문 답변 부인할 권리가 있고 전체 질문을 답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특정 질문을 답하지 않을 권리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문법오류로 의미전달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다. 21번은 “You can choose not to make statement of the overall procedures or you can- you can choose not to make statement on an individual occasion. (귀하는 모든 절차의 진술을 않을 수 있거나 개별 경우에 귀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였는데 ‘of the overall procedures’와 ‘on an individual occasion’ 등의 표현이 혼동을 줄 수 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2번 문장의 경우 다른 문장에 비해 대체로 통역 평균점이 조금 높다. 하지만 의미를 충실히 전달한 통역인이 상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심각한 오류를 보인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문장 역시 간단히 통역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통역인 2번, 3번, 8번, 9번이 평가자들로부터 비교적 충실한 통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ven if you don’t reply to the questions,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s.(질문들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통역한 2번 통역인과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 even if you remain silent.(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통역한 3번 통역인은 원문에 근접한 통역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였다. 8번은 “Even if you don’t make any remark, there won’t be any disadvantage.(귀하가 일체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통역하여 진술 거부권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이쉽지만 9번과 마찬가지로 “Even if you do not answer or make any statement, you will not have any disadvantages.(귀하가 답하지 않거나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로 표현하여 일체의 진술 거부가 일부 진술거부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비교적 충실한 통역으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18, 19, 20번 통역인이 2번 문장 통역에서 만점을 받았다. 통역인 18번은 “Even if you do remain silent,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 against you.(정말 침묵한다 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19번은 “You will not get disadvantages for not giving statement.(진술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20번은 “There will be no disadvantages even if you don’t answer the question or make statements.(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각각 통역하였다. 통역인 19번과 20번의 경우 부정문이므로 ‘any statement(s)’를 사용하지 않은 등 약간 표현상 이쉽지만 진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이 충실히 전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번 문장 통역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번 문장 통역에서도 의미 변화가 있거나 언어적 표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감점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5번 통역인의 경우 “Even though you refuse to answer some questions, you are not going to face disadvantage.(귀하가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역하여 진술거부권을 일부 답변을 거부한 경우로 한정하여 원문보다 의미가 협소해지면서 의미 변화가 있었으며, ‘are going to’는 법률적인 권리 고지에 다소 부적절한 어역으로 간주

된다. 6번 통역인은 아예 통역하기를 포기하였고, 7번 통역인은 얼버무려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통역인 10번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you do not get any um drawbacks or penalty(귀하는 어떠한 약점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확하게 통역하였으며 11번 통역인은 ‘not’를 빠뜨리고 “there will be any punishment against you(귀하에게 어떠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원문과 거리가 멀게 통역하였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번 문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적인 결과에 대한 일종의 경고가 담겨 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이라는 표현과 특히 ‘유죄의 증거’가 통역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죄의 증거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는 의미로, 영어권에서는 ‘evidence against you’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피의자 권리 고지 가운데 이 문장에 대한 오역이 가장 심했고 반복 청취를 요청하거나 6번, 7번 통역인과 같이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었다. 발화를 중간에 여러 차례 수정하고 망설이는 등의 발화오류는 통역인들이 통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역인 14번은 “If you explain without any..., it may um..it may backfire in the court.(귀하가 어떠한...없이 설명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로 통역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통역인은 ‘진술’을 ‘설명’으로 통역하였는데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다는 개념을 통역하지 않았고, ‘유죄의 증거’에 대해서도 망설이다가 어역에 맞지 않는 부정확한 통역을 하였다.

1번 통역인도 유죄의 증거를 이해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의 내용상 오류가 있다. 발화오류를 편집한 1번의 통역은 다음과 같다. “If you refuse to your right not to answer any uh statement at the court, that statement can be used against you at the court.(귀하가 법정에서 진술을 답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진술은 법정에서 귀하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지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게 행한 진술거부권 고지임에도 법정진술이라는 표현을 사

용한 점과 진술에 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사실에 맞지 않아 부정확한 통역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4번 통역인은 “The statement that you made after giving up on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can be used as evidence in the court.(귀하가 진술을 할 권리를 포기한 후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여 진술거부권이 아닌 진술권으로 잘못 통역하였다. 12번 통역인도 “If you don’t answer, it can be used as an evidence of your, ..your,...it can be used as evidence for judging your behavior.(귀하가 답하지 않으면, 이것은 당신의 당신의 증거로, 이것은 당신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로 통역하여, 원문 이해의 문제와 함께 표현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비교적 내용을 전달했다고 평가받은 5번 통역인의 통역을 보면, “Your statement that you give to us while by giving up your right not to answer the question can be used as evidence in the court(귀하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제공하는 귀하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였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말해 5번도 ‘유죄의 증거’라는 표현보다는 단순히 증거로 통역한 것이다. 또한 “A remark you make despite your right to remain silent can be used against you on trial.(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진술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한 8번 통역인도 ‘유죄의 증거’라는 표현을 정확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는 전달하였다.

두 번째 그룹은 사전 교육 중 형사소송법규정에 근거한 피의자 권리 고지 의미를 함께 논의하였으므로 뜻을 이해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기술훈련을 통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첫 번째 그룹과 통역의 품질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과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목표언어로 표현한 통역인은 이 그룹에서도 없었다. 이 중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통역인 18번과 19번의 예를 보아도 그러하다. 발화오류를 편집한 18번의 통역은 “If you choose not to remain silent and choose to speak, anything that you may say will and can be used as evidence at the court of law.(침묵하지 않고 진술하기로 하면, 귀하의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이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로 단순히 ‘증거’로 표현한 것과 조동사 사용 등은 미흡하나 핵심적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평

가되었고, 역시 발화오류를 편집한 19번 통역인의 통역도 “If you choose to testify giving up your right to remain silent, your statements can work against you in the court.(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하기로 선택한다면 귀하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여 ‘testify(증언하다)’라는 동사가 문제는 있지만 진술이 피의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달했다고 평가받았다.

### 3.3 변호인 조력권 고지

-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 고지에 해당하는 4번 문장의 평균점이 두 그룹 모두 두 번째로 높았다. 진술거부권에 비해 오역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으로 내용 왜곡보다는 주로 표현의 문제가 나타났다. 변호인의 참여권에 대한 법률적 논쟁은 있지만 엄밀히 말해 언어적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참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이영돈 2014 참조). 영어권에서는 피의자 및 피고인 변호인 선임권 또는 조력권에 해당하는 문구로 ‘right to a lawyer’, ‘right to have a lawyer assist in your defense’, ‘right to have your lawyer present’, ‘right to counsel’, ‘right to the presence of an attorney’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통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역인들의 신문(訊問)에 대한 의미 해석도 다양하게 나왔다. 신문은 ‘interview’ 또는 ‘interrogation’으로 흔히 번역할 수 있는데 후자는 반대신문과 같이 진술에 대해 반박하고 추궁할 수 있는 취조에 가깝기 때문에 영미 수사기관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 ‘interview’를 선호한다(Shuy 1998: 12). 한국 형사사법절차상 피의자 신문도 증인 신문과 같이 ‘신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표현 자체로는 ‘interview’에 가깝다. 이러한 양자선택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립적인 ‘questioning’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통역인들 중 신문을 이해한 통역인은 대부분 ‘interrogation’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서 평가자 3인에게 모두 최하점을 받은 통역인 1번, 2번, 12



번의 통역을 먼저 살펴보면, 통역인 1번은 “When you are at the court and you have to testify, you can have support from a lawyer.(귀하가 법정에서 진술/증언해야만 할 때,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였는데 맥락 및 주제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역이 있다. 피의자 신문을 피고인 신문과 혼동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도 법정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have to testify(증언해야만 하다)’라고 부정확하게 통역하였다. 통역인 2번도 피의자 신문과 법정진술을 혼동한 듯 “When you have to attend the court, you are free to be with your lawyer together and get the support from the lawyer.(귀하가 법정에 출석해야만 할 때 귀하는 변호인과 같이 있을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자유가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였다. 12번 통역인도 신문 받는 것을 ‘being judged’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신문의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피의자와 피고인의 명칭이 사법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유일하게 전체 그룹을 통틀어 통역인 8번이 평가자 3인으로부터 만점을 받았다. 8번은 “When you are in interrogation, you can get help from your lawyer, and your lawyer can participate in the interrogation.(귀하는 신문중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을 신문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였다.

통역인 5번, 9번, 18번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통역인 5번은 “When you are being interrogated, you can get help from a lawyer and you can also ask for legal assistance.(귀하는 신문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적인 도움을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였는데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내용은 누락되었지만 비교적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9번은 “When you are being interrogated, you can make your attorney to participate or you can get help from your lawyer.(신문당할 때, 귀하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여 사소한 문법오류는 있지만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를 잘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그룹의 18번 통역인의 경우에도 “When you are being interviewed, you may be aided by an attorney.(신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하여 비교적 의미를 잘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6번 통역인은 “When you are questioned, you are allowed to be helped by a lawyer.(신문받을 때 귀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통역함으로써 변호인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누락되었지만 신문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달하였다. 통역인 14번의 통역 “If you are asked question, you can get help from your personal lawyer.(질문을 받으면 개인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은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기 직전이 기 때문에 만일을 뜻하는 ‘if’ 접속사는 상황에 부적합한 표현이다. 또한 관사가 누락된 것을 포함하여 굳이 개인 변호사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오류에 해당한다. 통역인 21번의 통역 “When you are interrogated, you can choose to take in your attorney or be assisted by attorney.(신문받을 때 변호인을 들이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 단어 attorney에 앞의 절과 같은 소유격 ‘you’나 정 관사가 누락된 것도 본 연구자료에 흔히 나타난 문법오류이다.

#### 4. 결론

본 연구는 헌법적 권리이자 형사절차상 보호받아야 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조력권 고지의 통역 문제를 살펴보았다. 비교적 우수한 이중언어구사자로 간주되어 사법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통역 전공 학생들의 피의자 권리 고지의 통역을 평가한 결과, 사법통역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기술훈련 없이는 피의자 권리 고지 내용을 충실하게 통역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역 전공자라고 해서 법률담화에 대한 이해력과 표현력을 요하는 사법통역능력을 자동적으로 갖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통역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법통역 교육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과 권리 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전 교육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기회는 있었다 해도 문어적 특성이 강한 법률담화를 내용과 어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목표언어로 표현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통역인 개개인의 통역 능력의 차이와 비교 집단의 참가자 숫자를 통제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약식 사전 교육을 이수한 통역인들과 그렇지 않은 통역인들 사이에 큰 통역 품질 차이는 발견되

지 않았다. 비록 제한된 자료에 의존한 사례연구로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는 통역인에 대한 지식 위주의 약식교육만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사법통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지 못한 통역인에 의한 통역 제공은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포함한 적정절차를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산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역인에 대한 능력 검증과 교육이 부실한 현재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통역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언어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적정절차가 구현되고 공정한 신문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Lee 2017; 이지은 2017 등). 사실상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통역능력을 검증하거나 사법통역 교육을 실시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역인 교육과 평가 등을 위해 통역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해외 선진사례와 같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사법통·번역사 인증제도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능력을 검증 받은 전문 인력풀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김진아 외 2008; 이지은 외 2013).<sup>13)</sup>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선 통역인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통역될 수 있는 피의자 권리 고지와 같이 정형화된 문구만이라도 주요 외국어로 번역문을 구비하여 통역인이 활용하게 하는 것도 피의자의 권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이지은 2017: 360). 통역인의 자질 향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역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이해와 협조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 통역을 통한 수사나 재판진행에 대해 성찰적 노력과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통역인들이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통역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위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업무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3) 사법통역인증제 도입에 대한 정부기관과 법조계의 무관심 속에 전문성이 의심스러운 한국자격교육협회가 올해 6월 최초로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법통역능력검증과 무관한 필기고사를 국가인증시험으로 홍보하고 있어 직업 전문성에 대한 오해만 키울 소지가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번역공증시험을 들 수 있다(유정화 2015 참조).

## 참고문헌

- 금태섭 (2012) 「선전담변호사 제도의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 191-215.
- 김민지 (2012) 「한국형 미란다 경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형사정책연구』 23(3): 53-89.
- 김민지, 피세영 (2014) 「한국형 피의자 권리 고지문에 대한 이해도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23-46.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 정혜연, 이상빈 (2008) 『국내 법정통역 실태조사 및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개선 방향 모색』. 법원행정처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 박용철 (2010) 「진술거부권 불고지에 대한 소송법적 문제」, 『형사법연구』 22(1): 97-124.
- 박현준 (2013) 「특별사법경찰활동의 절차적 정당성 구현: 미란다 경고의 고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0(2): 1-22.
- 유영현, 김종오 (2008) 「경찰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32: 473-493.
- 안성훈, 이지은 (2012) 『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정화 (2015) 「번역공증의 문제점 고찰」, 『통번역학연구』 19(2): 89-109.
- 이동희 (2009) 「한국의 피의자 신문절차와 그 개혁」, 『형사법연구』 21(4): 135-152.
- 이지은 (2012a) 『다문화사회의 사법통역』. 서울: 집문당.
- 이지은 (2012b)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236.
- 이지은 (2013) 「사법통역 교육에 관한 실행연구: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사례」, 『번역학연구』 14(5): 195-223.
- 이지은, 장원경, 김재련 (2013)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용역연구과제 보고서.
- 이지은 (2014) 「이주여성 경찰통역인들의 경찰통역에 대한 인식: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157-186.

- 이지은 (2015) 「경찰통역 실태와 경찰관의 인식 조사 사례연구」, 『T&I Review』 5: 93-120.
- 이지은, 장원경 (2015) 「사법통역인의 순차통역 평가 사례 연구」, 『언어학연구』 20(1): 99-118.
- 이지은, 장원경 (2016) 「사법통역 제도개선을 위한 소고」, 『이화여대 법학논집』 20(1): 251-277.
- 이지은 (2017) 『사법통역의 이론과 실제: 경찰 통역에서 난민 통역까지』.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 이영돈 (20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47: 261-282.
- 정혜연 (2009) 「법정통번역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5.
- 주호노 (2014)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국제인권법의 관점에서」, 『경희법학』 49(4): 255-284.
- 최철 (2009) 「법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의 관한 고찰: 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57-270.
- 황의갑 (2010) 「수사절차에 있어서 법과 실무의 괴리: 일선경찰관들의 걱정절차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4(2): 145-165.
- Ainsworth, Janet (2010) 'Miranda Rights. In M. Coulthard and A. Johnson (eds.)'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Abingdon/New York: Routledge, 111-125.
- DeClue, Greg (2007) 'Oral Miranda Warnings: A Checklist and a Model Presentation', *Journal of Psychiatry & Law* 35(4): 421-441.
- Gibbons, John (2001) 'Revising the Language of New South Wales Police Procedures: Applied linguistics in Action', *Applied Linguistics* 22(4): 439-469.
- Gibbons, John (2003) *Forensic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in the Justice System*, Blackwell: Oxford.
- Hale, Sandra (2004) *Discourse of Court Interpre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 Hale, Sandra (2010) 'The need to raise the bar. Court interpreters as specialized

- experts', in Malcolm Coulthard & Alison Johnson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Forensic Linguistics*, New York: Routledge, 440-454.
- Lee, Jieun (2010) 'A case study of an untrained interpreter's court interpreting, 『번역학연구』 11(1): 339-359.
- Lee, Jieun (2015) 'How Many Interpreters Does It Take to Interpret the Testimony of an Expert Witness?: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Expert Witness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Semiotics of Law* 28(1): 189-208.
- Lee, Jieun (2017a) 'A Case Study of Interpreter-Mediated Witness Statement: Police Interpreting in South Korea',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8(2).
- Lee, Jieun (2017b) 'Due Process and Legal Interpreting: Communicating Suspects' Rights to Silence and Counsel across Languages', *T&I Review* 7.
- Nakane, Ikuko (2007) 'Problems in Communicating the Suspect's Rights in Interpreted Police Interviews', *Applied Linguistics* 28(1): 87-112.
- Rock, Francis (2007). *Communicating Rights: The Language of Arrest and Detention*.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Russell, Sonia (2000) "'Let Me Put it Simply...': The Case for a Standard Translation of the Police Caution and its Explanation', *Forensic Linguistics* 7(1): 26-48.
- Shuy, Roger W. (1997) 'Ten Unanswered Language Questions About Miranda', *Forensic Linguistics* 4(2): 175-195.
- Shuy, Roger W. (1998) *The Language of Confession, Interrogation, and Deception*. Thousand Oaks: Sage.
- Solan, Lawrence M. and Peter M. Tiersma (2005) *Speaking of Crime: The Language of Criminal Justice*, Chicago: The U Chicago P.

[Abstract]

## **Interpreting Criminal Suspects' Rights: A Case for Legal Interpreter Training**

Jieun Lee

(Ewha Womans University)

Under international law,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who do 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the legal procedure, are entitled to free assistance by interpreters (e.g. Article 14(3)(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s 5 and 6 of the 1950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y should be informed of charges, reasons for their arrest or detention, and their rights in the languages they understand. Criminal suspects' rights to silence and counsel are constitutional rights, which is also explicitly recognized in the South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Therefore, it is critical that criminal suspects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should be provided with adequate interpreting and informed of their rights before being questioned by investigators. If an untrained incompetent interpreter is engaged in the legal process, their constitutional rights may be compromised as a result of inaccurate interpreting. Drawing on the interpreting data provided by two groups of interpreting students, namely those who have received no training for legal interpreting and those who have received a very basic training for legal interpreting, this paper suggests that specialized training is essential in order to enhance the accuracy of legal interpreting.

▶ Key Words: legal interpreting, criminal suspects' rights, right to silence, right to counsel, legal interpreter training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이메일 [jieun.lee@ewha.ac.kr](mailto:jieun.lee@ewha.ac.kr)

관심분야: 사법통역, 커뮤니티통역, 통번역교육,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17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2일